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0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전재수 · 이연희
백혜련 · 강득구 · 김 윤
전용기 · 신정훈 · 김영호
위성곤 · 권철승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,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,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.

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

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,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.

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2조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.

1. 제98조제3호의 조건
2. 제98조제4호의 조건
3.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·면담 등 접촉의 제한
4.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

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.

1. 도망한 때
2.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
3.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

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 갇힌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 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·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. 1. 제98조제3호의 조건 2. 제98조제4호의 조건 3.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·면담 등 접촉의 제한 4.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
<u><신 설></u>	

	<u>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.</u>
	<u>1. 도망한 때</u>
	<u>2.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</u> <u>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</u>
	<u>3.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</u> <u>때</u>
<u><신 설></u>	<u>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</u> <u>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</u> <u>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</u> <u>갱신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</u> <u>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</u> <u>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</u> <u>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</u> <u>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</u> <u>실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·</u> <u>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</u> <u>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</u> <u>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</u> <u>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.</u>